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2006-제65호
----------	-----------

발의연월일

2006. 10. 13.

발 의 자

최인환 외 5인

1. 의결주문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규칙에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제정 취지와 사천시의회의 실정에 맞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함.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별첨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9회 임시회 - 운영위 부록)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6.4.28]